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4267-01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편람

2022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목 차



제1장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개요	1
제1절 의의	2
제2절 평가절차	2
제2장 경영실적 평가기준	3
제1절 평가대상 기관	4
제2절 평가지표 체계	4
제3절 평가지표별 세부평가내용	7
제3장 경영실적 평가방법	22
제1절 지표별 평가방법	23
제2절 계량지표에 대한 공통적용사항	33
제4장 평가결과 등 후속조치	40
제1절 평가결과의 종합	41
제2절 후속조치 등	42
[별첨] 기관별 평가편람	44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5
2. 농업정책보험금융원	50
3. 국제식물검역인증원	55
4. 한식진흥원	61
5.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69
6. 축산환경관리원	74

제 1 장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개요

제1절 의의

-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훈령 제427호)에 근거하여 기타공공기관의 매년도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 동 제도는 기타공공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매년 평가기준과 방법을 정한 평가편람을 작성한다.

제2절 평가절차

- 기타공공기관은 훈령 제9조에 따라 2023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작성양식, 제출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 각 기관은 경영실적보고서 중 계량지표 관련 실적에 대해서는 해당 계량실적에 대해 회계법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로 하여금 그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적 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기타공공기관은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타공공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기초로 하여 기타공공기관의 실적을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기타공공기관 임직원의 인터뷰 등을 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평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23년 6월 20일까지 기타공공기관의 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해당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한다.

제 2 장

경영실적 평가기준

제1절 평가대상 기관

- 2022년도 경영실적 평가대상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공공기관 유형구분 기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한다.
 - 기타공공기관(6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제2절 평가지표 체계

1. 기본체계

- 평가지표는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주요사업』의 2개 범주로 구성한다.
- 각 범주별 주요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범주	주요 평가내용
경영관리	경영전략, 사회적 책임, 재무성과관리,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주요사업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각 평가범주는 단위 평가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단위 평가지표는 복수의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할 수 있다. 단, 주요사업 범주는 주요사업별로 구분하여 비계량 또는 계량 세부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해당 주요사업의 계획·활동·성과 및 계량 지표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평가지표는 평가목적과 대상범위를 규정하는 지표정의와 세부평가내용으로 구성한다. 단, 기관 특성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는 일부 세부평가내용은 평가에서 제외 하되, 구체적인 배점은 평가단에서 조정한다.

2.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

□ 평가지표 및 가중치 기준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50)	1. 경영전략	14	11	3
	(1) 리더십	4	4	-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6	6	-
	(3) 국민소통	4	1	3
	2. 사회적 책임	13	8	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2	1	1
	(2) 안전 및 재난 관리	3	2	1
	(3) 친환경·탄소중립	2	1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1	2
	(5) 윤리경영	3	3	-
	3. 재무성과 관리	11	8	3
	(1) 재무예산관리	8	8	-
	(2) 재무예산성과	3	-	3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	12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9	9	-
	(2) 노사관계	3	3	-
	소 계	50	39	11
주요 사업 (50)	주요사업 계량지표	25	-	2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5	15	-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10	10	-
	소 계	50	25	25
합 계		100	64	36
가점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3	1	2
가점	인권경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	1	1	-
감점	총인건비 관리	(△2)	-	(△2)

* 평가지표 중 세부평가내용에 해당사항이 없는 기관은 지표를 결측 처리

□ 기관별 평가지표 조정

- 기관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 범주 내 지표별 가중치를 조정하여 설정할 수 있다.
-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평가지표는 유형 내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고, 주요사업 범주의 평가지표는 기관별 사업특성에 따라 다르게 설정한다.
- 기관별 주요사업 부문 계량지표 점수는 지표별, 기관 유형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최고득점기관과 최저득점기관의 점수 차이 등을 고려하여 표준화할 수 있다. 표준화 여부 및 방법 등은 경영평가단에서 결정할 수 있다.
- 기관별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이하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가점’).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가점을 위한 평가방법은 평가지표별 세부평가내용에 따른다.
- 기관별 인권경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이하 ‘인권경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 가점’). 인권경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 가점을 위한 평가방법은 평가지표별 세부평가내용에 따른다.
- 총인건비 관리 지표는 감점지표로 전환하여 평가한다. 총인건비 관리(감점)를 위한 평가방법은 평가지표별 세부평가내용에 따른다.
- 공공기관(임직원 포함)이 사회적 기본책무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점할 수 있으며, 그 중대성에 따라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위법행위 예시: 채용비리, 양성평등위반, 최저임금 미준수, 고용차별, 조세포탈, 회계부정, 안전·환경 법규 위반, 불공정거래 행위 등

-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처분 확정
- 벌금형 이상의 형 확정
- 감사원, 주무부처 감사 등에 따른 조치결과
- 경찰 입건, 검찰 기소 등 수사결과
- 금융감독원의 제재조치, 국회 등 외부기관의 비위행위 적발 등

제3절 평가지표별 세부평가내용

1. 경영관리 범주

① 경영전략 [14점]

(1) 리더십 [4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구성원 동기부여, 이사회 운영, 경영성과달성 등 기관장 및 경영진의 리더십을 평가한다.(비계량 4점)
세 부 평 가 내 용	<p>① 기관장 경영계약 과제선정 및 중장기·연도별 목표수준의 적정성, 경영계약과 성과지표간의 연계성 제고 등 경영계약상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p> <p>②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진의 노력과 성과 * 기관의 비전 및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극복해야할 대내외적 요소에 대한 인식 수준,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과, 전년도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인식 수준과 대처 전략 등</p> <p>③ 이사회 활성화와 실질적인 역할 강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 이사회 구성 및 역할 분담체계의 적절성, 이사회실의 실질적 역할강화를 위한 장치들의 실효성 등 * 이사회실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 평가 시 의결 안건, 사전심의율, 수정의결안건, 보고안건, 경영자문, 경영제언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p> <p>④ 대내외 이해관계자(조직 구성원, 고객, 주무부처, 유관기관 등)와 비전 및 전략 등을 공유하고, 조직 구성원을 효과적으로 동기부여하며,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기관장과 경영진의 노력과 성과</p> <p>⑤ 주요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기관장과 경영진의 노력과 성과</p>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6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기관의 비전, 경영목표, 경영전략 및 경영혁신 등에 대한 계획 수립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비계량 6점)
세 부 평가내용	<p>① 기관의 설립목적,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비전 핵심가치 경영목표의 설정 및 이와 연계된 경영전략의 체계적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 분석의 충실성 및 적절성 * 중장기 발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체계의 실현가능성, 중장기 계획과 단년도 계획 간 연계성 수준 등 *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 핵심업무와의 연계성, 국정과제 반영, ESG 등을 고려한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 수립 * 경영전략의 실행을 위한 핵심가치 공유, 조직 인력 예산배분, 핵심사업 이행 및 기능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 등 * 핵심사업과 기관 목표와의 연계성 수준, 핵심사업의 방향 및 규모, 범위의 적정성 수준 등 <p>② 경영혁신 및 경영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필요한 내부 절차의 감소 및 폐지, 복잡한 업무의 간소화, 업무 수행에 있어 조직 내 외부 전문가의 활용 범위 및 실적, 내부 구성원을 위한 업무표준화 노력 및 업무수행지침 작성 등 업무수행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노력 * 업무프로세스 혁신, 혁신추진조직 구축, 혁신활동 보상, 혁신역량강화, 혁신네트워크 구축, 혁신 협업 등 * 규제개혁, 적극행정,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공공서비스 혁신기술 융합 등을 통한 대국민 공공서비스 혁신 * 감사, 경영평가 및 컨설팅 결과 등에 따른 경영혁신 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 및 성과

(3) 국민소통 [4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등을 평가한다.(계량 1.5점)
세부평가내용	① 경영정보공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 점검대상: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통합공시항목 ※ 세부평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실적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 기획재정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정보공시 점검 배점 기준'(연도별 배점 반영)
지표정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나타난 고객만족도의 수준 및 개선실적을 평가한다.(계량 1.5점)
세부평가내용	① 평점은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의 고객만족도 지수와 조사결과 전년대비 향상도를 아래와 같은 비율로 합산하여 산출 * 농식품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해당 지수를 활용 - 전년도 고객만족도 지수가 90점이상 우수 기관은 8:2, 85점이상 양호기관은 7:3, 80점이상 보통기관은 6:4, 80점미만 미흡 기관은 5:5 ② 고객만족도 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산출 - 고객만족도 지수 = 100 - (90 - 평가년도 조사결과) × 2 * 지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함 ③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전년대비 향상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 - 전년대비 상승 사: $90(\text{기준점수}) + \frac{(\text{평가년도 조사결과} - \text{전년도 조사결과})}{(100 - \text{전년도 조사결과}) \times 10\%} \times (100 - \text{기준점수})$ - 전년대비 하락 사: $90(\text{기준점수}) + \frac{(\text{평가년도 조사결과} - \text{전년도 조사결과})}{\text{전년도 조사결과} \times 10\%} \times (100 - \text{기준점수})$ * 전년대비 향상도는 100점 만점으로 함 * 기준점수는 90으로 하되 전년도 조사결과가 90 이상인 경우 전년도 조사결과를 사용 ④ 신규 고객만족도 조사대상 기관은 당해연도 고객만족도 점수로만 산출
지표정의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비계량 1점)
세부평가내용	① 이해관계자 및 대국민 소통 채널을 제도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보 및 데이터 공유로 국민참여 기반 강화 ② 국민 참여와 소통이 기관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지 여부 등 소통의 성과와 환류를 위한 노력과 성과 * 국민제안, 아이디어 등을 활용한 현장중심의 대국민 서비스 혁신 등 ③ 대국민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② 사회적 책임 [13점]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2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실적 등을 평가한다.(계량 1점)
세 부 평 가 내 용	<p>①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0.7) : $\sum \text{월별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율} / 12 \times 0.7$ ※ 월별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율 : $\frac{\text{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상시근로자)}}{\text{월별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 월별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 상시근로자 수 \times 장애인 의무고용률(3.6%) * 상시근로자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 단, 근로자 중 원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 예외)는 제외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봄.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경우 소수점 이하 단위 절사 ※ 제출 증빙자료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p> <p>②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0.3): $\text{유공자 채용 실적} \div \text{우선고용인원} \times 0.3$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인원 : 상시근로자 수 \times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3%)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인원의 경우 소수점 이하 단위 절사 ※ 제출 증빙자료 : 국가유공자 채용실태 통보서</p>
지표정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비계량 1점)
세 부 평 가 내 용	<p>①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기관별 추진 전략 및 계획의 수립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공공기관의 채용 확대·조기 채용 노력 및 성과, 인턴제도 운영 내실화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 등을 위한 노력 및 성과 * 고용의 질 개선(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 제고, 근무여건 개선, 초과근로 감축 등)을 위한 추진 전략 또는 계획의 적정성</p> <p>② 퇴직자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이외에 정현원차 관리,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다양한 근로형태의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성과 * 교대제 변경,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및 탄력정원제 실시, 임금피크제 운영 노력 및 성과 등</p> <p>③ 육아휴직 활용, 장시간 근로 해소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 * 가족친화인증 여부, 자동육아휴직제,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유연근무제(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활용실적, 현혈공가 도입 여부 등</p> <p>④ 채용과정 및 채용 후 인력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블라인드 채용 및 직무수행능력중심평가, 고졸자·여성·무기계약직·별도직군 등에 대한 차별해소 및 적절한 처우개선 등</p>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p>⑤ 고졸자, 지역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형평적 인력 채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졸자) 기관별 고졸적합업무 발굴 및 고졸채용계획 수립·이행 실적 * (지역인재) 비수도권 및 혁신도시 이전지역 인재채용 비율 달성 노력 * (장애인) 장애인고용 컨설팅 이행사항 추진 등 장애인 채용 노력 * 저소득층(「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사람)·북한 이탈주민·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한 채용 노력 <p>⑥ 여성임원·관리자 및 여성채용 확대 등 여성인력 활용,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임명 목표제에 따른 목표 및 이행계획 적정성, 목표대비 실적,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등 * 임원 : 본부직제상 기관장·이사·감사 관리자 : 본부직제상 부서장 임용이 가능한 직급

(2) 안전 및 재난관리 [3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산업재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비계량 2점)								
세 부 평 가 내 용	<p>① 산업재해 등 근로자(간접고용, 하청업체 근로자 포함) 피해 방지 및 사업장(발주현장 포함) 안전관리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내부제안제도 운영,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질병 예방 및 임신부·장애인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력 <p>② 안전관리 역량 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체계 수립의 적정성,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구성과 인력 투입계획 및 활용의 적정성 * 내·외부 안전교육·재난안전상황별 대응훈련 실시 여부, 재난·안전사고 유형별 매뉴얼 작성·활용 여부 등 * 안전 관련 법적 의무사항 이행, 시설 사전점검,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활동의 적정성, 소방정밀점검 결과 지적사항 이행 여부 등 * (사고 발생 건이 있는 경우) 사고 발생 후 신속 전파 및 안전조치를 위한 긴급활동의 적정성, 사고처리·보상, 사고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포함하는 사고 이력 관리를 통한 재발방지 노력 등 안전사고 사후처리 활동의 적정성 <p>③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을 위한 정보보안 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평가내용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해당 재해 발생과정에서 안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0점 부여 가능 * 중대재해 : 「공공기관 안전관리지침」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고 * 안전법령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 안전관리지침」 등 안전법령상의 의무 위반 (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의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지표정의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한다.(계량 1점)								
세 부 평 가 내 용	<p>① 개인정보 보호 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개보위) 결과 반영 ※ 진단 등급에 따른 득점 구간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등급</th> <th>상</th> <th>중</th> <th>하</th> </tr> </thead> <tbody> <tr> <td>득점</td> <td>1</td> <td>0.7</td> <td>0.3</td> </tr> </tbody> </table>	등급	상	중	하	득점	1	0.7	0.3
등급	상	중	하						
득점	1	0.7	0.3						

(3) 친환경·탄소중립 [2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활동실적을 평가한다.(계량 1점)
세부평가내용	①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0.6) * 환경부 평가결과 반영(이행계획 대비 실적 100% 완료했을 경우 만점 부여)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0.4) * 환경부 평가결과 반영(구매실적 70% + 전년대비 향상도 30%로 평가)
지표정의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기관별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비계량 1점)
세부평가내용	① 기관별 여건·특성을 고려한 친환경·탄소중립 노력 및 성과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실적을 평가한다.(계량 2점)																													
세부평가내용	① 상생과 협력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총 합계 2점) * 산출방법: 기관별 실적 ÷ 자체평가 기준 × 가중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항목</th> <th>자체평가 기준</th> <th>기관별 실적 (비율, %)</th> <th>가중치</th> </tr> </thead> <tbody> <tr> <td>지역농산물 구매</td> <td>1인당 지역농산물 평균 구매금액(정원기준)</td> <td rowspan="8">구매실적</td> <td>0.4-0.8</td> </tr> <tr> <td>중소기업생산물</td> <td>구매총액의 50%</td> <td>0.3-0.5</td> </tr> <tr> <td>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물</td> <td>구매총액의 3%(공사 제외)</td> <td>0.2-0.3</td> </tr> <tr> <td>여성 기업생산물</td> <td>구매총액의 5%</td> <td>0.2-0.3</td> </tr> <tr> <td>장애인생산물</td> <td>구매총액의 1%</td> <td>0.3-0.5</td> </tr> <tr> <td>기술개발생산물</td> <td>중소기업몰품 구매총액의 10%</td> <td>0.2-0.3</td> </tr> <tr> <td>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생산물</td> <td>자활용사촌 생산 가능 품목 총 구매액의 7%</td> <td>0.2-0.3</td> </tr> <tr> <td>온누리상품권</td> <td>정상경비의 1%</td> <td>0.2-0.3</td> </tr> </tbody> </table>	항목	자체평가 기준	기관별 실적 (비율, %)	가중치	지역농산물 구매	1인당 지역농산물 평균 구매금액(정원기준)	구매실적	0.4-0.8	중소기업생산물	구매총액의 50%	0.3-0.5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물	구매총액의 3%(공사 제외)	0.2-0.3	여성 기업생산물	구매총액의 5%	0.2-0.3	장애인생산물	구매총액의 1%	0.3-0.5	기술개발생산물	중소기업몰품 구매총액의 10%	0.2-0.3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생산물	자활용사촌 생산 가능 품목 총 구매액의 7%	0.2-0.3	온누리상품권	정상경비의 1%	0.2-0.3
항목	자체평가 기준	기관별 실적 (비율, %)	가중치																											
지역농산물 구매	1인당 지역농산물 평균 구매금액(정원기준)	구매실적	0.4-0.8																											
중소기업생산물	구매총액의 50%		0.3-0.5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물	구매총액의 3%(공사 제외)		0.2-0.3																											
여성 기업생산물	구매총액의 5%		0.2-0.3																											
장애인생산물	구매총액의 1%		0.3-0.5																											
기술개발생산물	중소기업몰품 구매총액의 10%		0.2-0.3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생산물	자활용사촌 생산 가능 품목 총 구매액의 7%		0.2-0.3																											
온누리상품권	정상경비의 1%		0.2-0.3																											
지표정의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비계량 1점)																													
세부평가내용	① 지역사회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지자체 및 지역기업과의 협력사업 발굴, 지역대학과의 협력사업(지역문제해결 플랫폼 등) 발굴, 지역사회를 위한 시설 이용(중소기업에 어린이집 개방 등) 편의제공 노력과 지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농산물 등 지역생산품 구매 확대, 지역 및 국제행사 참여,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을 위한 노력 및 성과 등 ② 협력·위탁업체 적기 자금결제 등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선지급률 확대, 상생결제시스템 하도금지킴이 활용, 직불 조건부 발주, 표준계약서 활용, 주계약자 공동 도급 여부, 모범거래 모델 도입·이행 등

(5) 윤리경영 [3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p>경영활동 시 경제적·법적 책임과 더불어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려는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비계량 3점)</p>
세부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준법·윤리경영체계의 구축·운영 및 준법·윤리경영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경영 관련 전담조직과 지침(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 관련 내부규정(임원 직무 청렴계약 규정,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비리 행위자 처벌 규정 등) 마련·운영 여부, 갑질 근절방안 마련 이행, 직장내 괴롭힘 방지 이행, 성범죄 등 비윤리적 행위신고, 교육 실적 등 * 회계담당자 교육·훈련지원, 회계 관계 직원 우대채용 및 처우개선, 회계 통제 규정 마련 및 이행 등 회계신뢰성 제고 및 책임 강화 노력 ②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사업추진, 조직·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중요 기록물 분류체계 마련 등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참조) ④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 인권존중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충처리제도 운영 등 근로자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p>※ 위 평가내용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행위 및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0점 부여 가능</p>

③ 재무성과관리 [11점]

(1) 재무예산관리 [8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건전한 재무구조 및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한 재무예산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성과를 평가한다.(비계량 8점)
세 부 평 가 내 용	<p>① 합리적 예산 편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선정의 타당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신규·폐지 사업 선정 시 기준 수립 등 타당성 확보 노력, 사업 예산구조 변경 등) <p>②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운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성과 * 예산집행의 책임성 확보 및 예산누수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 예산 몰아쓰기 방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 <p>③ 예산운용지침, 혁신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의 편성·집행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직 정직자 보수지급 관련 지침 준수 여부 등 * 복리후생비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비, 의료비, 경조금, 특별휴가, 퇴직금, 복무행태, 고용세습, 사내대출 등 기관별 복리후생 제도 개선 및 과도한 복리후생 항목의 존재 여부 * 전년대비 복리후생비를 과도하게 집행하지 않았는지 여부

(2) 재무예산성과 [3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기관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재무(예산) 안정성, 투자 및 집행 효율성 등을 평가한다.(계량 3점)
세 부 평가내용	<p>① 재무성과 관련 세부평가지표를 통해 기관의 재무집행 성과 및 집행 효율성 등을 평가, 세부평가지표는 각 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설정</p> <p>* 재무예산성과 세부평가지표 예시</p> <p style="margin-left: 40px;">-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 예산현액}}$</p> <p style="margin-left: 40px;">- 자체수입증가율 = $\frac{(\text{당해연도 자체수입} - \text{전년도 자체수입})}{\text{전년도 자체수입}}$</p>

④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점]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9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와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비계량 9점)
세 부 평가내용	<p>①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 및 인적자원 운용계획 수립, 핵심 업무를 고려한 단위조직의 역할과 책임 설정 및 적절한 인력 배분을 위한 노력과 성과</p> <p>* 인력운영계획(직무·직급별 인력운영계획 등) 및 이에 따른 직제규정의 적정성, 기관의 전략 달성을 위한 조직구조의 적정성과 운영 효율성 확보 여부, 경영환경 분석 및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직의 구조 및 기능 개선 노력과 성과</p> <p>* (인력배분) 재배치계획 수립여부 및 적정성, 추진실적 등</p> <p>② 합리적 인사관리를 위한 노력과 성과</p> <p>* 인사위원회 구성·운영의 적정성, 인사규정, 임원선임, 승진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를 위한 제도의 합리성 등</p> <p>③ 구성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성과</p> <p>* 구성원들의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구성원들의 직무능력과 경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커리어패스 설계, 교육성과를 인사평정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p>

	<p>④ 합리적인 조직·개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사 목표 및 전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성과관리체계 운영, 조직 및 개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체계의 적정성, 성과 평가방법의 적정성 및 신뢰성, 자체성과급 등 합리적인 보상체계 구축 노력 및 성과 등 <p>⑤ 인력운영의 전문성 제고 노력과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특성에 따른 개방형계약직제 및 전문직위제의 운영, 인사교류제도 및 특별승진제도의 근거규정 마련 등 제도기반 구축 등 <p>⑥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 중심 보수체계 마련을 위한 직무분석 등 사전절차 이행 노력과 성과 * 직무가치, 능력, 성과 등에 기반한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개편을 위한 노력과 성과 * 합리적인 직무평가 결과의 반영, 지나친 연공성 개선 노력 및 성과 <p>⑦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구조, 임금체계, 직무특성 등을 고려한 임금피크제 유형, 적용대상, 임금조정기간, 임금지급률, 직무개발 등 제도설계의 적절성 *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목표 달성 여부, 임금피크 대상자의 활용도(중소·벤처기업 지원근무 실적 등), 복무·성과관리 등 인력관리의 적절성 등 운영 효과 * 임금피크제 관련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 및 재원조달 계획의 적절성
--	--

(2) 노사관계 [3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비계량 3점)
세 부 평 가 내 용	<p>① 노사간 협의체계 구축과 실질적 운영 등이 상호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협의회 설치 및 위원 구성, 개최횟수 등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노사협의회가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기관장 등 사용자 대표가 참석하는지 여부, 법에서 정한 보고, 협의, 의결사항 등이 성실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 노사간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는지 등을 평가 <p>② 노사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안에 대한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노사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적절성과 이를 통한 노사간의 공감대외 신뢰 형성의 정도를 평가 <p>③ 노사협의를 통한 근로조건의 실질적 향상과 구체적 성과</p>

2. 주요사업 관리와 성과

①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5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추진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등 주요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성과를 평가한다.(비계량 15점)
세부평가내용	<p>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 성과목표 정의, 성과지표 개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 주요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 사업별 재무·예산계획, 조직·인력 등 자원배분계획 수립의 적정성 <p>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활동 실적의 적정성 - 주요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운용 등 효율성 제고 노력의 적정성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변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 등 <p>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대비 성과목표 및 목표치 달성도 -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달성 기여도 등 <p>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와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 외부 지적사항과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등

②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10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을 평가한다.(비계량 7점)
세부평가내용	<p>①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 - 기관의 사업비중 및 정책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 배분의 적정성 - 투입(Input)·과정(Process)지표보다는 산출(Output)·결과(Outcome)지표로 구성하기 위한 노력 -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한 지표설정 노력 -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등
지표정의	주요사업 계량지표 목표 수준의 도전성을 평가한다.(3점)
세부평가내용	<p>① 주요사업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식, 산식구성 및 목표치 설정, 사업여건 변화 등에 따른 목표의 도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부여편차, 중장기 목표부여, 목표부여, β분포, 목표대실적 등 평가방식에 따른 난이도 차이 고려 (예: 일반적으로 “목표대실적”은 난이도가 낮은 평가방식에 해당) * 산식구성 및 목표치 설정에 따른 난이도 차이 고려 (예: “중장기 목표부여” 평가방식의 경우, 적용된 중장기목표수준에 따라 난이도 차이 발생) * 사업환경, 가용자원 등 대내외 사업여건 변화에 따른 난이도 차이 고려 (예: 해외사업의 경우, 대상국과의 외교여건 변화 등에 따라 난이도 차이 발생)

3.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가점지표)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정원감축 규모 수준을 평가한다.(계량 2점)
세부평가내용	① 혁신계획 상 정원감축 규모 ※ 정원 감축 계획 수준 = 정원 조정분* / 조정 전 정원* * 혁신계획에 기재된 정원 조정분 및 조정전 정원을 의미 ② 정원감축 규모가 공공기관 전체 평균의 2배 이상인 경우 2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전체 평균 수준 이상 공공기관 전체 평균의 2배 미만인 경우 1점의 가점을 부여
지표정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경상적 경비 절감 노력 수준을 평가한다.(비계량 1점)
세부평가내용	① 공공요금, 여비 등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절감 노력

4. 인권경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점지표)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임직원, 고객,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등 기관 내·외부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상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비계량 1점)
세부평가내용	① 인권경영 체계 구축 노력과 성과 * 인권경영 추진 시스템 구축,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여부, 기관 내외(부서, 고객,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등) 확산 노력과 성과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 또는 실시 여부

5. 총인건비 관리(감점지표)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여부를 평가한다.(계량 △2점)
세부평가내용	<p>① 총인건비 인상률은 다음과 같이 산출</p> <p style="text-align: center;">- 총인건비 인상률 = $\frac{\text{평가년도 총인건비} - \text{전년도 총인건비}}{\text{전년도 총인건비}}$</p> <p>* 총인건비의 정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름</p> <p>② '22년도 총인건비 인상률(1.4%) 범위내에서 인건비를 인상한 경우 감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초과한 경우에는 '-2'점의 감점을 부여</p> <p>* 다만, 일자리 나누기 도입기관의 경우 총인건비 인상률의 5% 이하(1.47%)의 범위 내에서 초과하는 경우 감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5%~10% 이하(1.54%)의 경우에는 '-1'점,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점의 감점 부여</p>

제 3 장

경영실적 평가방법

제1절 지표별 평가방법

1. 비계량지표 평가방법

- 비계량지표는 C등급(보통)을 기준으로 6개 등급(A~F)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본 등급보다 우수한 성과를 낸 경우 + 점수를 부여하여 9등급으로 평가한다.
등급별 평점은 다음 표와 같이 설정한다.

< 비계량지표의 등급 설정과 평점 >

구분	등급	평점	비고
A등급	A ⁺ A ⁰	100 87.5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 - 전년도 평가지적사항 및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등 상당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등
B등급	B ⁺ B ⁰	75.0 62.5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다소 만족하는 경우 - 과거에 비해 실적이 양호하거나 주어진 여건하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실적보다 약간이라도 향상된 경우 등
C등급	C	50.0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에 보통인 경우 - 과거에 비해 실적이 거의 동일하거나 주어진 여건하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실적과 거의 동일한 경우 등
D등급	D ⁺ D ⁰	37.5 25.0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에 미흡한 경우 - 과거수준의 실적에 약간이라도 미달하거나, 예산낭비 요소 등이 발견되며, 부진사업에 대한 분석 및 개선노력이 미흡한 경우 등
E등급	E	12.5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결여한 경우 - 사업실적이 불량하거나 집행상 중대한 결점이 있는 경우 등
F등급	F	0	- 사업 집행상 중대한 결점이 있으며, 외부기관 등에서 도덕적 해이 사례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개선노력이 극히 미흡한 경우 - 중대한 도덕적 해이 또는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중대사고 발생 사례인 경우 등

- 비계량지표에 대해서는 각 지표별 세부평가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운영실적과 전년대비 개선도를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 다만, 지표별 세부평가항목 중 일부항목에 대해 외부기관 등에서 도덕적 해이 사례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개선노력이 극히 미흡하거나, 중대한 도덕적 해이 또는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중대사고 발생 사례인 경우에는 해당지표를 0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비계량지표 중 공통지표에 대해서는 1개 이상 기관에 동일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등 기관간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 재무예산관리 지표의 방만경영정상화 여부 평가와 관련하여 감사원 등 외부기관 및 경영평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거나,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상의 이행내역을 위반(이면합의, 개선사항의 원상복귀 등)하였을 경우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량지표 평가방법

- 계량지표는 개별지표의 특성에 따라 기관별 편람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 등으로 평가하되, 목표부여(편차) 방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 계량지표 평가방법 >

평가방법	평가방법 개요	비고 (적용대상 등)
목표부여 (편차)	당해연도 실적과 최저목표와의 차이를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의 차이로 나누어 측정하되, 최고·최저목표는 5년간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설정	평가대상 실적치가 5년이상 축적되고 신뢰할 만한 경우
목표부여	당해연도 실적과 최저목표와의 차이를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의 차이로 나누어 측정하되, 최저목표와 최고목표는 기준치에 일정비율을 감안하여 설정	평가대상 실적치가 3년 미만인 경우 또는 5년 이하 실적치가 있으나 신뢰하기 곤란한 경우
목표 대 실적	편람에 목표수치를 제시하고 그 달성여부를 평가	평가대상 실적치가 5년 미만인 경우
글로벌 실적 비교	글로벌 우수기업의 실적치, 세계적 수준 등과의 격차, 비중 등을 활용하여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를 설정하되, 목표부여(편차) 방법 등을 적용	글로벌 우수기업의 실적과 직접 비교하는 지표,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하여 평가인증되는 국제기준의 성과 지표 또는 이를 활용하여 개발된 지표 등의 경우
중장기 목표부여	주무부처 중장기계획 또는 선진국 수준 등을 활용하여 최종 목표를 설정하되, 연도별 목표는 사업 수행 기간과 최종목표를 활용하여 단위목표를 산출하고 목표부여 방법 등을 준용하여 설정	주무부처 중기계획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거나 선진국 대비 하위수준인 공공서비스 등의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1 목표부여 평가

가. 평가방법

- 목표부여 지표의 평가방법은 기준치에 일정 수준을 고려한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에 따라 득점구간을 설정하여 측정한다.
- 목표부여 방법의 기본득점은 20점(100점 만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평점을 계산한다. 평점의 상한과 하한은 각각 100점과 20점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한다.

$$20\text{점} + 80\text{점} \times \frac{\text{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목표부여 방법은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를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적인 목표부여 방법(기준치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목표부여(편차) 방법(기준치에 과거 일정기간의 표준편차를 가감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기준치는 편람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상향지표는 직전년도 실적치와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치 중 최대값으로 하고 하향지표는 최소값으로 한다. 단 동일한 회계기준에 의한 3개년 실적치가 없는 경우 2개년 실적치에 의한다.
- 목표부여 방법에서는 지표의 특성에 따라 상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110%, 최저목표는 기준치×80%로 계산하고, 하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90%, 최저목표는 기준치×120%로 계산한다. 다만, 주요사업인 경우 상향목표의 최고목표는 기준치×120%로 적용하고, 하향목표의 최고목표는 기준치×80%로 적용한다
- 목표부여(편차) 방법에서는 상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는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로 계산하고, 하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는 기준치+2×표준편차 (과거 5개년)로 계산한다. 다만 주요사업의 경우 상향목표의 최고목표는 기준치+2×표준편차 (과거 5개년)로 적용하고, 하향목표의 최고목표는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로 적용한다. 단, 동일한 회계기준에 의한 5개년 실적치가 없는 경우 동일한 회계기준에 의한 3개년 또는 4개년 편차를 적용한다.
-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는 개별 지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그 값을 편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기관의 조직 및 사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자료의 불연속으로 과거 5개년 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단축하여 3개년 또는 4개년 편차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평가연도에 자료의 불연속이 발생하여 목표부여(편차)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목표부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목표부여(편차) 방법의 평가 시 이용되는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표준편차 } S = \sqrt{\frac{\sum_{i=1}^n (Y_i - \bar{Y})^2}{n}}$$

Y_i : i연도의 Y값

\bar{Y} : Y의 평균값

n : 표본기간

○ 총인건비인상률 지표의 평가방법은 ‘목표부여’로 표시되지만 기본득점 20점을 적용하는 지표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평가방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른다.

나. 표준편차 극단치의 처리방법

1) 표준편차의 계산

○ 목표부여(편차)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표준편차의 값이 과다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계상의 극단치(Outlier)는 표준편차 계산시 제외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극단치 여부는 극단치 제외 후 4개년 편차가 극단치 제외 전 5개년 편차의 50% 이하인 경우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과거년도의 처리방법, 발생원인 등을 병행 검토하여 결정한다.

2) 기준치의 조정

○ 상기 절차에 따라 극단치로 판명된 경우 극단치가 직전 3개년 실적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치를 조정한 후 득점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치는 직전 4개년 실적치 중 극단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극단치가 직전년도(t-1) 실적치인 경우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치와 직전년도 실적치를 기준으로 기준치를 계산하되, 직전년도 실적치의 계산 시 상향목표는 직전전년도(t-2)실적치+2×표준편차(과거4개년 : (t-2)(t-3)(t-4)(t-5))를 상한으로, 하향목표는 직전전년도(t-2) 실적치-2×표준편차(과거4개년 : (t-2)(t-3)(t-4)(t-5))를 하한으로 하여 산출한다.

* 직전 3개년 실적치 중 어느 하나가 극단치인 경우 기준치의 계산

구분	기준치의 계산	
극단치가 (t-1)인 경우	상향지표	$\max \left\{ \min \left\{ \begin{array}{l} (t-1) \text{ 실적치} \\ (t-2) \text{ 실적치} + 2 \times \text{표준편차(과거5개년)} \\ (t-1)(t-2)(t-3) \text{3개년 실적치 평균} \end{array} \right. \right.$
	하향지표	$\min \left\{ \max \left\{ \begin{array}{l} (t-1) \text{ 실적치} \\ (t-2) \text{ 실적치} - 2 \times \text{표준편차(과거5개년)} \\ (t-1)(t-2)(t-3) \text{3개년 실적치 평균} \end{array} \right. \right.$
극단치가 (t-2)또는(t-3)인 경우	상향지표	$\max \left\{ \begin{array}{l} (t-1) \text{ 실적치} \\ (t-1)(t-2)(t-3)(t-4) \text{중 극단치를 제외한 3개년 실적치의 평균} \end{array} \right.$
	하향지표	$\min \left\{ \begin{array}{l} (t-1) \text{ 실적치} \\ (t-1)(t-2)(t-3)(t-4) \text{중 극단치를 제외한 3개년 실적치의 평균} \end{array} \right.$

2] 목표대실적 평가

- 목표대실적 지표의 평가는 목표대실적의 비율인 목표달성도로 평가한다. 목표는 물량, 공정률, 비율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별도의 평가방법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표달성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ext{목표달성도} = \frac{\text{실적}}{\text{목표}}$$

- 목표의 성격상 목표달성도가 높을수록 경영성적이 좋은 경우(상향목표)와 낮을수록 경영성적이 좋은 경우(하향목표)로 하여 목표달성도별 평점은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다만, 평점의 상한과 하한은 각각 100점, 20점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한다.

$$\begin{aligned} &\circ \text{상향목표} : 20 + 80 \times Y \\ &\circ \text{하향목표} : 20 + 80 \times \frac{1}{Y} \end{aligned}$$

주 : Y = 평가년도의 목표달성도

3] 글로벌 실적비교 평가

- 글로벌 실적비교의 평가방법은 글로벌 우수기업의 실적,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하여 평가·인증되는 실적 등을 고려하여 세계 수준과의 격차, 점유율 등을 비교하여 측정한다.
- 글로벌 실적비교 평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목표부여(편차) 방법을 적용한다.

4 중장기 목표부여 평가

- 중장기 목표부여 방법은 중장기적 성과관리 관점에서 바람직한 수준의 목표치와 목표 달성 연도를 정하여 장기 추세선을 설정하고 이를 1~3년간 이행실적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 중장기 목표부여 방법은 장기 추세선상의 기준치에 일정 수준을 고려한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에 따라 득점구간을 설정하여 측정한다.
- 중장기 목표부여 방법의 기본득점은 20점(100점 만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평점을 계산한다. 평점의 상한과 하한은 각각 100점과 20점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한다.

$$20\text{점} + 80\text{점} \times \left[\left(\frac{\text{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right) \times a + \left(\frac{\text{실적}(\text{최근3년평균}) - \text{최저목표}(\text{최근3년평균})}{\text{최고목표}(\text{최근3년평균}) - \text{최저목표}(\text{최근3년평균})} \right) \times (1 - a) \right]$$

* a : 당해연도 목표구간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 반영 비중 (%)

** 1-a :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목표구간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 반영 비중 (%)

- 중장기 목표부여 방법은 당해연도 목표구간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목표구간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며, 산출값 상한과 하한은 각각 1과 0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한다.
- 당해연도 목표구간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목표구간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 시 반영 비중은 50%:50%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 업무 및 사업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반영비중을 달리 적용한 경우(50%:50%가 아닌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해당 반영 비중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최근 3년 평균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다만, 최초 도입 시 최근 3년간 실적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장기 추세선 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최근 2년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할 수 있다.
- 장기 추세선은 기준목표(A)와 중장기 목표수준(B) 및 목표달성기간(n)을 고려하여 산출하되 3년 단위로 최근 실적치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 주무기관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3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기준목표, 중장기 목표수준 및 목표 달성기준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기준목표(A)는 평가지표의 최초 개발 시에는 활용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의 실적치를 적용한다. 다만, 3년 단위로 장기 추세를 조정할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실적의 산술평균과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연도(t-1) 목표치를 산술평균하여 기준목표를 조정하여야 한다.
- 중장기 목표(B)는 주무부처 중장기계획 또는 선진국 수준 등으로 설정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중장기 경영목표를 준용하여 설정할 수 있다.
- 기준치는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연도(t-1) 목표치로 하며 단위목표(a)는 기준목표(A)와 중장기 목표(B)간 차이를 목표달성기간(n)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목표달성기간(n)은 (중장기 목표 달성 예상연도-기준목표 연도)로 산출한다.

$$\text{단위목표}(\alpha) = \left| \frac{\text{중장기목표}(B) - \text{기준목표}(A)}{\text{목표달성기간}(n)} \right|$$

- 다만 사업의 특성상 선형의 장기추세를 적용하기 힘든 경우 기준목표, 단위목표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중장기 목표부여 방법에서는 상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 + 2×단위목표(a), 최저목표는 기준치 - 2×단위목표(a)로 계산하고, 하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 - 2×단위목표(a), 최저목표는 기준치 + 2×단위목표(a)로 계산한다.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는 개별지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그 값을 해당 공공기관의 편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전년도 실적이 장기추세를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 기준치를 직전년도 실적치로 조정하여 평가하고, 단위목표(a)도 조정하여 평가한다.

$$\text{조정단위목표}(\alpha') = \left| \frac{\text{중장기목표}(B) - (t-1)\text{기준목표}(A')}{\text{잔여목표달성기간}(n')} \right|$$

- 전년도 실적이 중장기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에는 중장기 목표의 수준, 정책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 불가피하게 지표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장기 목표를 직전년도 실적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상향지표인 경우 최고목표는 직전년도 실적(변경된 중장기 목표), 최저목표는 최고목표 - 1×단위목표*로 하며, 하향지표인 경우 최고목표는 직전년도 실적(변경된 중장기목표), 최저목표는 최고목표 + 1×단위목표*로 한다.

* 단위목표 = |{(변경된 중장기목표 - 종전 중장기목표) / 잔여기간}|

- 단, 전년도 실적이 중장기목표와 동일한 경우에는 최고목표는 직전년도 실적(중장기 목표)으로 하고, 단위목표는 최근 개선 추세 및 사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5 기타 평가방법

- ‘총인건비관리(감점)’ 지표의 평가방법은 ‘목표부여’로 표시하되, 목표는 「'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이며, '22년도 총인건비 인상률(1.4%) 범위내에서 인건비를 인상한 경우 감점하지 않고, 초과하는 경우 ‘-2’점의 감점을 부여한다.
 - 다만, 일자리 나누기 도입기관의 경우 총인건비 인상률의 5% 이하(1.47%)의 범위 내에서 초과하는 경우 2점, 5% ~10% 이하(1.54%)의 경우 1점, 10% 초과하는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한다.
- 주무부처가 평가하는 일부 지표의 계량항목은 주무부처가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 기관의 특성상 특정 비계량·계량지표(또는 평가요소)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표(평가요소)의 가중치는 결측치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재무성과관리’ 내 자체수입증가율 지표는 다음과 같이 평점을 계산한다.

$$\text{기본특점} + (100\text{점} - \text{기본특점}) \times \frac{\text{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기본득점은 자체수입비율이 속한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자체수입액)에 따른 자체수입비율

자체수입 비율	45% 이상	40% 이상 ~45% 미만	35% 이상 ~ 40% 미만	35% 미만
기본득점	80점	60점	40점	20점

제2절 계량지표에 대한 공통적용사항

- 다음에 제시된 공통적용사항은 기관별 평가편람에서 예외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 용어의 정의

(1) 부가가치

- 부가가치는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보고서상에 계상된 다음 항목의 합으로 구성된다.
 -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인건비 : 인건비의 정의를 참조하되,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된 인건비와 총인건비 인상률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인건비는 제외
 - * 노동생산성 측정시 평균인원에서 비정규직 인원(무기계약직을 포함)을 제외하는 기관은 부가가치 산정 시 비정규직 인건비(무기계약직을 포함)를 제외할 수 있다.
 - 순금융비용 : 손익계산서상의 이자비용(사채이자 포함)에서 수입이자와 할인료(유가증권이자 포함)를 차감한 금액
 - 임차료 : 동산, 부동산, 임차료 및 특허권 등 각종 권리 사용료
 - 세금과공과 : 법인세비용을 제외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제세금과 공과금
 - 감가상각비 : 유형 및 무형자산의 상각비
- 다만,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관별 편람에 부가가치 산정방식을 별도로 정하거나, 통제불능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부가가치 구성항목에 대하여 기관별 편람에 별도로 명시한 경우, 위의 공통산식이 아닌 기관별 편람에 명시한 고려사항을 적용한다.

(2) 총자산

- 총자산, 부채, 자기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등은 재무제표상의 금액으로 한다.
- ‘자본생산성’과 ‘총자산 회전률’, ‘ROA 글로벌 경쟁력’ 지표의 총자산은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의 평균으로 하되, 건설중인 자산은 제외한다.
- 신규로 취득하는 자산으로 인해 총자산의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자본생산성, 총자산회전율 등의 비교가능성을 감안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매출액 영업이익률’ 지표나 ‘EBITDA 대 매출액’ 지표 등과 같이 영업이익을 평가하는 지표에 있어서 영업이익은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3) 인건비

- 인건비는 건설중인 자산, 당기제조원가, 판매비와 관리비(혹은 영업비용), 영업외비용(특별손실포함)에 포함된 임직원(일용잡급 포함)에 대한 급료, 임금, 제수당 등과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말하며, 사실상 급여의 일부로 볼 수 있는 복리후생비 및 경영평가성과급 부분을 포함한다.
-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을 위한 총인건비의 정의는 「‘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지침」과 「‘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른다.
 -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휴일근무·초과근무 수당은 총인건비에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최초지정된 연도에 정부예산에서 인건비가 증액된 경우에는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한다.
 - 해외근무수당 등은 총인건비에 포함하되, 공무원 수준 이내에서 집행하는 금액은 총인건비 산정시 제외할 수 있다.
- 해외에서 외화로 지급되는 인건비에 대하여는 환율변동 효과를 조정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 통화별 현지화표시 인건비지급액에 통화별 평가대상연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통화별 원화표시 인건비 지급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원화표시 해외인건비를 산정할 수 있다.
- 공공기관 청년인턴 인건비는 총인건비인상률 평가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직급별 인원변동에 따른 자연증감액은 변동이 있는 해당 직급내의 실질임금을 적용하여 증원소요인건비를 계산한다. 통합직급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실질임금을 적용하여 증원 소요인건비를 계산한다.

(4) 평균인원, 금액 등의 계산

- 평균인원, 평균재고자산, 평균운전자본 및 차입금 평균잔액 등은 기초와 매월 말 합계를 13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 평균인원 산정시 군입대·육아휴직 대체 충원자와 휴직자가 중복될 경우, 한시적(2년)으로 대체 충원자를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다.
- 평균인원은 정규직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527호)’ 제2조 제2호에 의한 비정규직 중 ‘한시적’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다.
 - ‘한시적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 평균인원 산정시 유급휴직자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 청년인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노동생산성 등 지표의 점수 산출시) 비교 가능성 등 동질성이 유지되도록 기준치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다만,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균인원 산정 시 비정규직 인원(무기계약직은 포함)을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의 특성과 제외 사유를 기관별 편람에 명시한다.

2. 평가방법 적용요령

(1) 지표값

- 지표값은 경상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 수수료, 환율, 이자율 등과 같이 가격결정이 경영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격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일부 평가항목은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값으로 평가한다. 불변가격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불변화 지수로는 평가항목에 따라 국민총량지수와 기관개별지수로 구분하여 적용한 지수를 사용한다.
- 불변가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평가연도 실적치를 기준연도의 불변화지수로 나누어 불변 실적치로 구한다. 구체적인 불변화 방법은 각 기관별 평가편람에서 정한다.

(2) 통제불능성의 판단

- 통제불능성은 지속가능성, 예측성, 반복성, 경영성과에 미치는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 (예시) 임시거액의 투자자산처분 손익 등은 법인세비용차감전 손익에 가감하여 평가하되, 동일사항에 대해 평가에 기반영된 사항은 실적치의 연속성, 비교가능성 등 비교기간 중 동질성 유지
- 경영성과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수입·비용 및 인력 등의 변화, 예상치 않은 임시 대규모의 거래 및 정책사업, 정부정책 이행, 대외관계의 변화, 전염병, 상품·서비스 가격의 급격한 변화 등 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경영환경의 극단적 변화로 인하여 기관의 비용·수입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영향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정부정책에 따른 재정 조기집행, 공공부문 투자확대에 따라 부채증가 등 추가적인 경영부담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계량평가지 이를 고려하여 부가가치, 매출액, 자산, 부채, 관리업무비, 금융비용, 평균인원 등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경영성과 영향을 조정하여 평가할 경우 실적치의 연속성·비교가능성 등 비교기간 중 동질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발생시점에서 조정하지 않은 통제불능사유를 발생 이후 시점에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혹은 불리한 방향으로 이중조정 되지 않도록 처리한다.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경영실적 조정은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한다.
- 코로나19와 경영실적 감소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기관의 실적 감소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영향을 조정하여 결측 또는 보정 처리하되, 보정의 경우 객관적인 보정계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정 유형별로 적절한 방식을 적용한다.
- ‘사회적 책임’ 지표도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 ‘총인건비 관리’는 코로나19 영향을 조정하며, 구체적인 방식은 ‘총인건비 인상을 템플릿’을 적용한다.

< 코로나19 영향의 유형별 보정방식 예시 >

유형	내용	보정 방안
① 특정 기간 제외	- 일정 기간 휴관·휴업 및 영업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단위로 실적 구분이 가능하고 코로나19 발생이 특정기간의 실적 변동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확한 경우, 해당기간 제외 후 나머지 실적을 전체 실적으로 환산
② 특정 사업 제외	- 일부 세부사업 중단 및 제한 - 공간, 시설 등의 휴관 및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사업으로 실적 구분이 가능하고 코로나19 발생이 특정 세부사업의 실적변동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확한 경우, 해당 세부사업 제외 후 나머지 실적을 전체 실적으로 환산
③ 고용·취업 및 창업	- 고용·취업 및 창업 실적 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고용·취업 및 창업 현황 혹은 군별(대상, 산업 등) 고용·취업 및 창업 현황을 반영하여 보정
④ 수요 및 매출	- 수요 및 매출 관련 실적 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경기 상황 혹은 해당 분야 경기상황을 반영하여 보정
⑤ 글로벌 영향	- 글로벌 경기변동으로 인한 인적·물적 관련 실적 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산업(혹은 관련 산업)의 실적 혹은 글로벌 실적과의 비교를 기초로 보정
⑥ 연구 성과	- 학술적·경제적 성과, 인력 양성 등 연구 관련 실적 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산업(혹은 관련 산업)의 관련 실적과의 비교를 기초로 보정

- (3) 목표부여 지표의 경우, 목표설정 당시 근거로 한 향후 연도 실적 예상치(기관측 제시)가 왜곡 제시되었음이 추후 평가시점에서 확인될 때에는 경영평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편람상의 당초 목표치 혹은 목표부여방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거나 감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만점 목표치가 발생 불가능한 수준인 0미만이거나 1(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점 목표치를 ‘0’ 또는 ‘1(100%)’로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4) 글로벌실적비표 평가방법은 기관이 작성·제출한 실적보고서상에 글로벌 경쟁기관 등의 최근 실적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이 평가결과를 확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최신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관이 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시점에서 비교대상이 되는 국가의 당해 연도 자료가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관은 동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최신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5) 기관 통·폐합, 기능조정으로 인해 실적치의 연속성·비교가능성·객관성 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계량평가방법 및 기준 적용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6) 경영실적의 연속성·비교가능성을 저해하는 소송 관련 충당금 전입액 등은 확정판결시까지 유예하여 평가할 수 있다.
- (7) 회계기준으로 IFRS를 도입한 기관은 IFRS에 따라 산출된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평가하되, 연결재무제표 대신 기존 개별재무제표와 유사하게 별도재무제표에 지분법 평가를 반영한 수정재무제표(평가용 IFRS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IFRS(국제회계기준)도입의 영향을 받는 지표를 목표부여(편차) 방법으로 평가할 때는 도입 첫해에는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방식 재무제표에서 산출된 과거 5개년의 표준편차를 사용하며, 차년도에도 동일한 표준편차를 사용할 수 있다.
- IFRS에 따른 회계원칙 중 평가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구 분	평가시 조정방안
연차수당과 장기종업원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인건비 인상률 평가시 연차수당과 장기종업원급여(장기근속포상 등)는 발생주의가 아닌 과거 K-GAAP에서와 동일하게 현금주의(확정채무)로 평가한다. - 단, 노동생산성 등 타 지표에서는 IFRS에 따른 발생주의로 평가한다.
종업원 저리대여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 저리대여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인식하는 ‘종업원급여’는 총인건비 인상률 평가시 제외하여 평가한다. - 단, 노동생산성 등 타 지표에서는 IFRS에 따른 발생주의로 평가한다.

- (8) 신규로 추진되는 정부위탁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인력 등은 동 사업의 성과 발생 이후(사업추진 2년 후, 3년차부터 반영)부터 평가할 수 있다.
- (9) 관련법령의 제·개정, 정부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조직·인력운용상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며, 기관별 편람에 이를 명시한다.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등에 따라 공공서비스 향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력이 증가되는 경우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계량지표는 증원으로 인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여 산정한다.

(11) 공정률 지표의 경우 경영평가의 목적이 특정연도의 경영실적 평가이므로 누적 공정률이 아닌 당해연도 공정률의 목표와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 4 장

평가결과 등 후속조치

제1절 평가결과의 종합

- 각 지표별 평가점수는 지표별 평점에 지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고, 비계량 지표와 계량지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기관의 종합 평가결과를 산출한다.
 - 다만, 일부 지표의 점수산출을 할 수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지표에 대한 배점은 제외하고 합계를 산출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종합평가결과와 범주별 평가결과를 산출한다.
- 기관의 종합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이 6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구간은 비교평가 등급구간, 기관단위 개별평가 등급구간, 개선도 평가 등급구간으로 각각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비교평가 등급구간은 당해연도 경영실적 평가점수 및 분포 등을 활용하고, 기관단위 개별평가 등급구간은 기관의 과거 경영실적 평가점수 및 분포 등을 활용하며, 개선도 평가 등급구간은 기관의 경영실적 개선 등을 활용하여 평가결과 확정시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할 수 있다.

등 급	수 준 정 의
탁 월 (S)	모든 경영 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우 수 (A)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양 호 (B)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양호한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양호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보 통 (C)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
미 흡 (D)	일부 경영 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성과는 다소 부족한 수준
아주미흡 (E)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경영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경영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 시도가 필요한 수준

제2절 후속조치 등

가. 성과급 지급

- 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률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한 바를 준용한다.

나. 우수·부진기관에 대한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표창 등을 시행 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 결과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계획을 평가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제출받아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 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결과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 등에 대하여 해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단, 평가대상 연도말 기준으로 기관장·상임이사의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 한편,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상임이사가 중대재해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임기간에 따른 예외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경영실적 보고서 허위·오류 등에 대한 조치

-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 및 책임정도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다만, 중대한 오류가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관련되는 지표의 하향조정(최대 0점)
 - 당초 결정된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한 삭감

- 해당기관에 대한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요청

고의성	중대성 정도*	결과처리
고의적 (허위)	중대한 사항	- 해당지표 0점 처리한 값에서 종합평가등급 1단계 하향 조정
	경미한 사항	- 해당지표 0점 처리
비고의적 (오류)	중대한 사항	- 해당지표 등급 1단계 하향 조정 및 해당 실적 수정
	경미한 사항	- 해당 실적 수정 및 그에 따른 점수 보정

* 중대성 정도의 판단 기준은 평가단에서 결정하되, 최종 결과처리는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다.

라. 사회적 기본채무 위반 및 사회공헌에 대한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용비리, 양성평등위반, 최저임금 미준수, 고용차별, 조세포탈, 회계부정, 재난·사고, 불공정거래 행위 등 공공기관(임직원 포함)의 중대한 사회적 기본채무 위반 또는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의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등급 또는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경제 기여, 공공복리 증진, 국가이미지 제고 등 공공기관이 상당한 수준의 사회공헌을 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공헌 정도 및 기관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또는 성과급 지급률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상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준용한다.

마. 맞춤형 경영컨설팅 실시

- 평가결과 실적부진기관 및 다년간 실적부진 상태가 지속되는 기관에 대해 경영개선 및 구조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 기관요구가 있을 경우 기관신설, 기관유형 변경 등에 따라 최초로 평가받는 기관에 대해 평가제도, 경영관리 등에 대한 기초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 기관요구가 있을 경우 기관의 경영목표·전략, 재무·인사 등 경영기법에 대한 컨설팅이나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 평가결과 실적부진기관 및 다년간 실적부진 상태가 지속되는 기관에 대하여 컨설팅을 받은 기관은 컨설팅 결과를 경영개선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별첨

기관별 평가편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총괄요약표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50)	1. 경영전략	14	11	3
	(1) 리더십	4	4	-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6	6	-
	(3) 국민소통	4	1	3
	2. 사회적 책임	13	8	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2	1	1
	(2) 안전 및 재난 관리	3	2	1
	(3) 친환경·탄소중립	2	1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1	2
	(5) 윤리경영	3	3	0
	3. 재무성과관리	11	8	3
	(1) 재무예산관리	8	8	-
	(2) 재무예산성과	3	-	3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	12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9	9	-
	(2) 노사관계	3	3	-
소 계	50	39	11	
주요 사업 (50)	1. 가축방역사업	24	9	15
	(1) 시료채취사업(주요질병) 추진 노력도	7	-	7
	(2) 시료채취사업(AI) 추진 노력도	4	-	4
	(3) 농장예찰(예찰실시결과보고) 달성률	4	-	4
	(4) 가축방역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9	9	-
	2. 축산물위생사업	16	6	10
	(1) 도축검사 이상(폐기) 보고율	2	-	2
	(2) 축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율	4	-	4
	(3)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 이상보고 향상도	3	-	3
	(4) 현물검사 클레임 제로 달성	1	-	1
	(4) 축산물위생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6	-
	3.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10	10	-
소 계	50	25	25	
합 계	100	64	36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14점]

- (1) 리더십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국민소통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사회적 책임 [13점]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11점]

- (1) 재무예산관리 [8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④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점]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9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 가축방역사업 [24점]

(1) 시료채취사업(주요질병) 추진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7점)	
정 의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에 의해 계획된 시료채취 (주요 질병) 달성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료채취 목표 달성도 = (시료채취 실적 / 목표(계획) 채취수) x 100 * 목표(계획) 채취수 : 주요 질병 시료채취 계획 채취수의 합 ※ 산출시 고려사항 · 시료채취 실적은 우리 기관에서 운영 중인 팜스(FAHMS) 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 · 시료채취 계획량은 농식품부 계획*을 참조, '두수'를 기준으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 ** 주요질병 :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뉴캐슬병 · 구제역·HPAI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등 기관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 환경에 의해 실적 달성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그 영향을 조정 또는 반영할 수 있다.
(2) 시료채취사업(AI) 추진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4점)	
정 의	농림축산식품부 'AI 상시예찰 검사 추진계획'에 의해 계획된 시료채취사업 (AI) 추진 노력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료채취사업(AI) 추진 노력도 = (시료채취 실적 / 목표(계획) 채취수) x 100 * 목표(계획) 채취수 : AI 시료채취 계획 채취수의 합 ※ 산출시 고려사항 · 시료채취 실적은 우리 기관에서 운영 중인 팜스(FAHMS) 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 · 시료채취 계획량은 농식품부 계획*을 참조하고, '점수'를 기준으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 'AI 상시예찰검사 추진 계획」 · 구제역·HPAI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등 기관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 환경에 의해 실적 달성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그 영향을 조정 또는 반영할 수 있다.

(3) 농장예찰(예찰실시결과보고) 달성률 (평가방식 : 목표대 실적, 계량 4점)

정 의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에 의해 계획된 농장예찰(예찰실시결과보고) 달성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찰실시결과 보고 목표 달성도 = 예찰실시결과 보고실적/목표(계획)건수 X 100 ※ 산출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질병예찰실시결과보고 실적은 우리 기관에서 운영 중인 팜스 (FAHMS) 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 · 예찰실시결과보고서 목표(계획)건수는 농식품부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의 기준에 따라 농식품부와 협의한 사업계획임 · 구제역·HPAI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등 기관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 환경에 의해 실적 달성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그 영향을 조정 또는 반영할 수 있다.

(4) 가축방역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9점)

② 축산물위생사업 [16점]

(1) 도축검사 이상(폐기) 보고율(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계량 2점)

정 의	도축검사 이상(폐기)보고율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준치	직전년도 실적치와 직전 3개년 평균실적치 중 최대값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1 × 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2 × 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산식 및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검사 이상(폐기) 보고 향상도 = (이상보고 건수/ 도축검사두수) x 100 ※ 산출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건수 및 검사두수는 위생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실적치에는 포유류 실적과 가금류 실적을 합산 - 도축장구조조정에 따른 도축장수 감소, 구제역·HPAI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등 기관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 환경에 의해 실적 달성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그 영향을 조정 또는 반영할 수 있다.

(2) 축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율(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4점)

정 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검사원의 도축검사 기여도를 평가한다.
목 표	100%
측정산식 및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율 = $\{(해체검사\ 두수 + 지육검사\ 두수) / 2\} / 도축\ 신청\ 두수 \times 100$ ※ 산출시 고려사항 - 해체검사 두수 및 지육검사 두수는 위생사업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실적을, 도축 신청 두수는 위생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출하두수를 기준으로 한다.

(3)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 이상보고 향상도(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계량 3점)

정 의	현물검사(수입축산물) 이상보고 향상도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준치	직전년도 실적치와 직전 5개년 평균실적치 중 최대 값
목 표	<p>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p> <p>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p>
측정산식 및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물검사 이상보고 향상도 = $(이상보고건수 / 현물검사건수) \times 100$ ※ 산출시 고려사항 - 이상보고건수는 위생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구제역, HPAI, BSE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등 기관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 환경에 의해 실적 달성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그 영향을 조정 또는 반영할 수 있다.

(4) 현물검사 클레임 제로 달성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1점)

정 의	현물검사클레임 제로화를 통해 신뢰도향상 기반마련 및 국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평가한다.(하향지표)												
목 표	현물검사 클레임 제로 달성(클레임 0건)												
측정산식 및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물검사클레임 제로 달성 노력 = $100점 - \sum \text{클레임 발생점수 (클레임 유형별 감점)}$ - 클레임 유형별 5단계 감점 점수 적용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징계 수위</td> <td>파면·해임</td> <td>정직</td> <td>감봉</td> <td>견책</td> <td>주의·경고</td> </tr> <tr> <td>점수</td> <td>20점</td> <td>16점</td> <td>12점</td> <td>8점</td> <td>4점</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레임 건수는 감독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공식 접수된 건수로 산출 - 징계수준의 경우, 공문접수된 클레임에 대한 경중에 따라 징계를 하여 확정된 징계수위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징계 수위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주의·경고	점수	20점	16점	12점	8점	4점
징계 수위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주의·경고								
점수	20점	16점	12점	8점	4점								

(5) 축산물위생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6점)

③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10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총괄요약표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50)	1. 경영전략	14	11	3
	(1) 리더십	4	4	-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6	6	-
	(3) 국민소통	4	1	3
	2. 사회적 책임	13	8	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2	1	1
	(2) 안전 및 재난 관리	3	2	1
	(3) 친환경·탄소중립	2	1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1	2
	(5) 윤리경영	3	3	0
	3. 재무성과관리	11	8	3
	(1) 재무예산관리	8	8	-
	(2) 재무예산성과	3	-	3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	12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9	9	-
	(2) 노사관계	3	3	-
소 계		50	39	11
주요 사업 (50)	1. 농업정책자금 관리	14.5	5.5	9
	(1) 정책자금 검사 실시율	7	-	7
	(2) 중점점검 대상 관리 노력	2	-	2
	(3) 농업정책자금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5	5.5	-
	2. 농업재해보험 관리	14.5	5.5	9
	(1) 농업정책보험의 안정적 관리 노력	5.5	-	5.5
	(2) 보험사업점검 횟수 증가율	3.5	-	3.5
	(3) 농업재해보험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5	5.5	-
	3.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11	4	7
	(1)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	3.5	-	3.5
	(2) 투자지원사업 확대 성과	3.5	-	3.5
	(3) 농식품모태펀드 운용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4	-
	4.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10	10	-
소 계		50	25	25
합 계		100	64	36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14점]

- (1) 리더십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국민소통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사회적 책임 [13점]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11점]

- (1) 재무예산관리 [8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④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점]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9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농업정책자금 관리 [14.5점]

(1) 정책자금 검사 실시율 (평가방식 : 목표 대 실적, 계량 7점)

정 의	농림수산정책자금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통한 정책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검사 실적을 평가한다.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p>① 정책자금 관리·감독 기능 강화 측정을 위해 검사 실시기관 비율을 평가</p> <p>* (산식) 검사 실시기관 비율 = 검사 실시기관 수 ÷ 검사 목표기관 수 x 100</p> <p>** 검사: 정기·일반·비대면·기획검사 및 합동검사(감독기관 감사지원)</p> <p>*** 검사 목표기관 수: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 기준(정원 × 최근 5년간 평균 1인당 검사 기관수)</p>

(2) 중점점검 대상 관리 노력 (평가방식 : 목표 대 실적, 계량 2점)

정 의	내부통제 취약 가능성이 있는 대출기관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취급한 농림수산정책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 강화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상기관에 대한 관리 노력을 평가한다.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p>① 내부통제 취약 가능성이 있는 대출기관에서 취급한 정책자금 관리·감독 기능 강화 측정을 위해 중점점검 대상기관 관리 노력을 평가</p> <p>* (산식) 중점점검 대상 검사 실시율 = 중점점검 대상 검사 실시기관 수 ÷ 중점점검 대상 목표기관 수 x 100</p> <p>** 검사: 정기·일반·비대면·기획검사 및 합동검사(감독기관 감사지원)</p> <p>*** 중점점검 대상 목표기관 수: 당해연도 검사계획 수립 기준</p>

(3) 농업정책자금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5.5점)

② 농업재해보험 관리 [14.5점]

(1) 농업정책보험의 안정적 관리 노력(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계량 5.5점)

정 의	농업정책보험(농작물·가축·농기계·농업인) 상품 및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 종사자에게 안정적으로 정책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관리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농업정책보험의 안정적 관리 노력 = ∑보험별 상품·제도개선 건수 * 상품·제도개선 건수는 관련 법령, 사업시행지침, 상품약관, 사업약정서 등에 반영된 건 및 개선이 확정된 건을 의미

(2) 보험사업점검 횟수 증가율(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계량 3.5점)

정 의	보험사업자와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점검 실적의 기준연도 대비 증가 수준의 측정을 통해, 재해보험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사업관리 확대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당해연도 사업점검 횟수 ÷ 기준연도 사업점검 횟수 * 경영평가 당해연도 사업점검 횟수를 수행 실적으로 산정 ** 우리 원이 농업재해보험사업관리를 위탁받은 201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그 해에 실시한 사업점검 수행 실적

(3) 농업재해보험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5.5점)

③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11점]

(1)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평가방식 : 목표 대 실적, 계량 3.5점)

정 의	지속적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의 성과 측정을 위해 연도별 모태펀드 운용지침·운용계획 상 목표비율 대비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의 달성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목표달성도 =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 ÷ 목표비율 × 100 *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 = 자조합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약정액 ÷ 모태펀드 추가조성액 ** 목표비율 = 연도별 모태펀드 운용계획(정기) 상 자조합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약정액 ÷ 운용지침 상 모태펀드 추가조성액 ※ 산출시 고려사항 : 운용지침·계획상 조성액 및 출자목표액 변경 시, 변경액 적용

(2) 투자지원사업 확대 성과(평가방식 : 목표 대 실적, 계량 3.5점)

정 의	유망 농식품경영체 발굴 및 투자유치 역량 제고 성과측정을 위해 정부의 연간 모태펀드 운용계획 및 투자지원 사업계획 상 목표대비 달성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투자지원사업 확대성과 = (A + B) ÷ 2 * A는 {100 × (모태펀드 맞춤형 컨설팅 수료 건수) ÷ (연간 모태펀드 운용계획 상 맞춤형 컨설팅 수료 목표 건수)} 와 100% 중 작은 값 ** B는 {100 × (농식품 클라우드펀딩 성공 건수) ÷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 지원사업 기본계획 상 클라우드펀딩 성공 목표 건수)} 와 100% 중 작은 값 ※ 산출 시 고려사항 : 운용·기본계획상 목표 변경 시 변경 건수 적용하며, 운용·기본계획 상 목표 미지정 시 타 운영계획 등으로 대체

(3) 농식품모태펀드 운용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4점)

④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10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총괄요약표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50)	1. 경영전략	14	11	3
	(1) 리더십	4	4	-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6	6	-
	(3) 국민소통	4	1	3
	2. 사회적 책임	13	8	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2	1	1
	(2) 안전 및 재난 관리	3	2	1
	(3) 친환경·탄소중립	2	1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1	2
	(5) 윤리경영	3	3	0
	3. 재무성과관리	11	8	3
	(1) 재무예산관리	8	8	-
	(2) 재무예산성과	3	-	3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	12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9	9	-
	(2) 노사관계	3	3	-
소 계	50	39	11	
주요 사업 (50)	1. 선박 아시아매미나방(AGM) 검사	28	9	19
	(1) 선박검사를 통한 상대국 AGM 검출 예방률	14	-	14
	(2) 안전사고 예방률	5	-	5
	(3) 선박검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9	9	-
	2. AGM 예찰 방제	6	3	3
	(1) AGM 예찰 활동률	3	-	3
	(2) AGM 예찰 방제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3	-
	3.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6	3	3
	(1) 수입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성과	3	-	3
	(2)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3	-
	4.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10	10	-
	소 계	50	25	25
합 계	100	64	36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14점]

- (1) 리더십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국민소통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사회적 책임 [13점]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11점]

- (1) 재무예산관리 [8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④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점]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9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선박 아시아매미나방(AGM) 검사 [28점]

(1) 선박검사를 통한 상대국 AGM 검출 예방률(평가방식 : 목표 대 실적, 계량 14점)

정 의	인증원이 발행하는 AGM 무감염증명서의 대내외 신뢰도 제고 및 상대국에서 신속 통관을 위하여 상대국 AGM 검출 예방 실적을 평가한다.(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p>상대국 AGM 검출 예방률(%)</p> $= \left(\frac{1 - \text{평가연도 상대국 AGM 검출 실적} \times \text{가중치}}{\text{평가연도 AGM 선박검역 실적}} \right) \times 100$ <p>※ 산출시 고려사항</p> <p>1) AGM 선박 검역 실적 : 「선박에 대한 AGM 검사 규정」 제5조에 따라 신청받고, 식물검사원이 AGM 선박 검역을 실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선박 1척을 실적 1로 한다.</p> <p>2) 상대국 AGM 검출 실적 : 국내에서 선박 AGM 검사 후 미국, 캐나다, 칠레, 뉴질랜드, 아르헨티나(`20.9.28일 이후)에 입항시 AGM 난괴가 검출되어 통보된 선박의 수이며, 선박 1척당 AGM 난괴 검출 정도에 따라 가중치 적용</p> <p>* AGM 난괴 검출 정도에 따른 가중치</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head> <tr> <th>난괴(점)</th> <th>1~5</th> <th>6~10</th> <th>11~20</th> <th>21이상</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가중치</td> <td>1</td> <td>2</td> <td>4</td> <td>5</td> <td>0.5</td> </tr> </tbody> </table> <p>** 기타 : 평가연도 이외 기간에 무감염증명서를 발급받은 선박</p> <p>*** 국내 선박 검사 이후 상대국[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아르헨티나(`20.9.28일 이후)] 입항전 AGM 분포국가를 경유한 선박은 제외함</p> <p>**** 평가연도에 상대국에서 검출된 실적만 인정</p>	난괴(점)	1~5	6~10	11~20	21이상	기타	가중치	1	2	4	5	0.5
난괴(점)	1~5	6~10	11~20	21이상	기타								
가중치	1	2	4	5	0.5								

(2) 안전사고 예방률(평가방식 : 목표 대 실적, 계량 5점)

정 의	선박 AGM 검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p>안전사고 예방률(%)</p> $= \left(1 - \frac{(\text{안전사고 발생인원} \times \text{가중치}) - \text{안전사고 후속조치} \times 0.5}{\text{선박검역 근무인원}} \right) \times 100$ <p>※ 산출시 고려사항</p> <p>1) 안전사고 발생인원 : " AGM 선박검사 안전수칙 지침" 에 따른 선박 검사시 안전과 관련된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고자의 합(안전사고 보고서 제출 건수)이며, 사고자 상해에 따라 가중치* 적용</p> <p>* 사고자 상해 가중치</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head> <tr> <th>구분</th> <th>사망</th> <th>중상</th> <th>중경상</th> <th>경상</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가중치</td> <td>40</td> <td>5</td> <td>2</td> <td>1</td> <td>0.5</td> </tr> </tbody> </table> <p>1. 경 상 : 4주 이하의 통원 진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p> <p>2. 중경상 : 4주 이상의 통원진료 혹은 2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상해</p> <p>3. 중 상 : 뇌 등 생명 유지의 위험이 있는 주요 장기의 손상, 신체 중요 부위 상실이나 변형이나 신체 주요기능 상실 이상</p> <p>4. 기 타 : 경미사고(의사 최초 진단 5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고는 발생하였지만 상해가 없는 경우 등)</p> <p>2) 선박검사 근무 인원 : AGM 선박 검사를 위해 근무한AGM 현장검역을 위해 출장 등록한 인원의 합 (지역 사무소 인원 + 평가년도 AGM 검사 관련 기간제근로자)</p> <p>3) 동일한 사고가 당해 3건 이상 발생시 별점 5점 추가(가중치에 적용)</p> <p>4) 후속조치 : 안전사고 발생 후 직원 공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공문 건수</p>	구분	사망	중상	중경상	경상	기타	가중치	40	5	2	1	0.5
구분	사망	중상	중경상	경상	기타								
가중치	40	5	2	1	0.5								

(3) 선박 검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9점)

② AGM 예찰 방제 [6점]

(1) AGM 예찰 활동률 (평가방식 : 목표 대 실적, 계량 3점)

정 의	AGM 고위험기간 중 항만 및 항만 주변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여 발생밀도에 따라 방제 및 선박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트랩설치 조사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p>① AGM 예찰 활동률(%)</p> $= \left\{ \left(\frac{\text{평가년도 AGM 트랩 설치수}}{\text{목표 트랩 설치수}} \times 0.4 \right) + \left(\frac{\text{평가년도 AGM 트랩 조사수}}{\text{목표 트랩 조사수}} \times 0.6 \right) \right\} \times 100$ <p>※ 산출시 고려사항</p> <p>1) 목표 트랩 설치수 = 지난 3년간 AGM 발생량 증감을 반영한 AGM 트랩 설치 수(전년도 AGM 트랩 설치수 ± 지난 3년 전년대비 포획 수 증감률의 평균 × 0.1)</p> <p>2) 목표 트랩 조사수 = 예찰 방제 요령에 따른 6~9월 고위험 기간 트랩 조사 목표 수(당해연도 트랩 설치 수 × 12, 6~9월 10일간격 조사기준)</p>

(2) AGM 예찰 방제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3점)

③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6점]

(1) 수입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성과(평가방식 : 목표 대 실적, 계량 3점)

정 의	수입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실적과 병·해충·금지품 발견을 통해 검역장소 관리 성과를 평가 한다.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p>검역장소 관리성과(%) =</p> $\left(\frac{\text{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실적}}{\text{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신청 건수}} \times 0.3 + \frac{\text{병해충·금지품 통지실적}}{\text{병해충·금지품 발견실적}} \times 0.7 \right) \times 100$ <p>※ 산출시 고려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실적 : 관리 신청 건수에 대해 식물검역관리인이 관리 완료한 건수 2)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신청 건수: 인증원 누리집을 통해 당해연도에 신청된 건수(신청 후 취소된 건은 미포함) 3) 병해충·금지품 통지실적 : 병·해충·금지품 발견에 대하여 관할 식물 검역기관에 통지한 실적*이며, 컨테이너 1개에서 나온 병해충·금지품 통지실적을 1로 한다. * 발견한 병해충금지품에 대해 발견 후 1일 이내 통지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 4) 병해충·금지품 발견실적 : 검역본부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운영요령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발견 건수이며, 컨테이너 1개에서 나온 병해충 금지품 실적을 1로 한다.

(2)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3점)

④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10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식진흥원

❖ 총괄요약표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50)	1. 경영전략	14	11	3
	(1) 리더십	4	4	-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6	6	-
	(3) 국민소통	4	1	3
	2. 사회적 책임	13	8	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2	1	1
	(2) 안전 및 재난 관리	3	2	1
	(3) 친환경·탄소중립	2	1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1	2
	(5) 윤리경영	3	3	0
	3. 재무성과관리	11	8	3
	(1) 재무예산관리	8	8	-
	(2) 재무예산성과	3	-	3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	12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9	9	-
	(2) 노사관계	3	3	-
소 계	50	39	11	
주요 사업 (50)	1. 한식 진흥 기반 조성	8	3	5
	(1) 한식 콘텐츠 활용도	5	-	5
	(2) 한식 진흥 기반 조성 성과관리의 적정성	3	3	-
	2. 국내외 한식 확산	19	7	12
	(1) 한식 체험 확산 노력	5	-	5
	(2) 국내외 한식당·단체 지원 노력	5	-	5
	(3) 해외 한식 확산 성과	2	-	2
	(4) 국내외 한식 확산 성과관리의 적정성	7	7	-
	3.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13	5	8
	(1) 한식교육기관 지원 노력	3	-	3
	(2) 한식전문인력 양성 실적	3	-	3
	(3) 한식 교육 만족도	2	-	2
	(4)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5	5	-
	4.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10	10	-
소 계	50	25	25	
합 계	100	64	36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14점]

- (1) 리더십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국민소통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사회적 책임 [13점]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11점]

- (1) 재무예산관리 [8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④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점]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9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한식 진흥 기반 조성[8점]

(1) 한식 콘텐츠 활용도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5점)

정 의	진흥원이 개발·보유한 콘텐츠의 확산 및 활용 노력에 의한 한식 콘텐츠 활용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p>한식 콘텐츠 활용도</p> $= (\text{당해연도 콘텐츠 활용 건 수}^* / \text{목표 콘텐츠 활용 건 수}^{**}) \times 100\%$ <p>* 한식 콘텐츠 활용 건 수 : 공식적으로 접수(한식포털 홈페이지, 공문 등)된 한식 콘텐츠 요청에 따른 제공 건 수, 한식 조사·연구 보고서 다운로드 건 수의 합</p> <p>** 목표 콘텐츠 활용 건 수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실적 중 높은 실적의 110%</p> <p>※ 산출 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인·동일일자 한식 콘텐츠 요청의 경우 동일 건으로 실적 산정 - 한식 조사·연구 보고서 다운로드 건 수의 경우, '23년부터 국가통계 추진에 따라 통계청 KOSIS '한식 산업 실태조사'의 다운로드 건 수로 반영 예정

(2) 한식 진흥 기반 조성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3점)

② 국내외 한식 확산 [19점]

(1) 한식 체험 확산 노력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및 목표부여(편차), 계량 5점)

정 의	한식 체험 확산의 노력에 따른 한식문화공간 이음 및 국내외 외국인 대상 체험프로그램 참여인원 확산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p>① 한식 체험프로그램 외국인 참여실적 : 100%</p> <p>② 한식문화공간 방문객수 :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3개년)</p>
측정 산식 및 변수	<p>한식 체험 확산 노력</p> <p>= ① (한식 체험 프로그램 외국인 참여실적 × 60%) + ② (한식문화공간 방문객수 × 40%)</p> <p>① 한식 체험프로그램 외국인 참여실적 = $\frac{\text{당해년도 외국인 참여인원}}{\text{목표 외국인 참여인원}} \times 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참여인원 : 한식진흥원 주관 국내외 온·오프라인 체험 프로그램 참여 외국인 수 (한식문화공간 이음, 원데이 투어, 한식전문인력 파견 사업 등) · 목표 외국인 참여인원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의 110% <p>※ 산출 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으로 '20년부터 사업 구조 변경되어 2개년 실적 보유, '23년부터 목표부여(편차) 방식 적용 예정 <p>② 한식문화공간 방문객 수 : 연간 한식문화공간 이음 방문객 실적 합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음 방문객 산출 : 각 공간별 전자계수 시스템으로 확인된 수치 · 기준치 : 직전 2개년 코로나19 및 한식문화공간 이전으로 인한 미운영 기간 고려, '19년도 실적과 '19 ~ '17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기준으로 산정 <p>※ 산출 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4월부터 한식문화공간 시범 운영 고려, 방문객 수(4~12월) 12개월로 환산 평가

**(2) 국내외 한식당·단체 지원 노력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및 목표부여(편차), 계량 5점)**

정 의	국내외 한식 확산을 위한 한식당·단체 지원 노력 및 결과(상향지표)를 평가한다. (복합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① 한식당 지원 실적 : 100% ② 관련 단체 지원 실적 : 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국내외 한식당·단체 지원 노력 = ① (한식당 지원실적 × 50%) + ② (관련 단체 지원실적 × 50%) ① 한식당 지원 실적 = $\frac{\text{당해년도 지원 한식당 수}}{\text{목표 한식당 수}} \times 100\%$ · 지원 한식당 수 : 국내외 한식 확산 사업에 참여한 한식당 수(한식 소비촉진 행사, 한국적 이미지 물품 지원, 국산 식재료 지원 한식당 등) · 목표 한식당 수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의 110% * '20년 신규 사업으로 2개년 실적 보유, '23년부터 목표부여(편차) 방식 적용 예정 ② 관련 단체 지원 실적 : 국내외 한식 확산 사업에 참여한 관련 단체 수(해외한식당협의체, 해외 교류단체·기업 등) ※ 산출 시 고려사항 - 사업 세부 내역 변동에 따라 매년 대상 사업 일부 변동 가능

(3) 해외 한식 확산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2점)

정 의	해외 소비자의 한식당 만족도 향상으로 국내외 한식 확산 사업 성과(상향지표)를 도전적으로 평가한다.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p>해외 한식 확산 성과 = 한식당 만족도 × 100%</p> <p>① 한식당 만족도 = (당해연도 만족도 / 목표 만족도) × 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족도 : 한식진흥원 「해외 한식 소비자조사(한식당 방문 만족도)」 · 목표 만족도 : 전년 대비 110%로 산정 {전년도 점수+(100 - 전년도 만족도 점수)*10%}

(4) 국내외 한식 확산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7점)

③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13점]

(1) 한식교육기관 지원 노력 (평가방법 : 목표부여(편차), 계량 3점)

정 의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한식전문인력 교육 지원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p>최고목표 :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4개년)</p> <p>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4개년)</p>
측정 산식 및 변수	<p>한식교육기관 지원 노력 = ∑당해연도 국내외 지원 교육기관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교육기관 수 : 한식 교육기관 지원 사업 수혜기관(대학, 한식교육기관 등), 한식 전문강사 해외파견 사업 수혜기관(해외 대학, 호텔, 공관 등), 한식 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

(2) 한식전문인력 양성 실적 (평가방법 : 목표대실적, 계량 3점)

정 의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한식전문인력 양성 실적(상향지표)을 평가한다.(복합지표)
목 표	① 한식 조리인력 양성 실적 : 100% ② 한식 교강사 양성 실적 :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p>한식전문인력 양성 실적 = ① (한식 조리인력 양성 x 40%) + ② (한식 교·강사 양성 x 60%)</p> <p>① 한식조리인력 양성 실적 = (당해연도 '국내외 한식조리교육' 인원 / 목표 교육인원) × 100 · 수료 인원 : 국내외 한식전문 조리 인력 교육 수료인원 (국내외 한식 관련 교육기관·호텔 등 대상 교육 수료생) · 목표 교육 인원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의 110% ※ 산출 시 고려사항 - 전문인력 양성 실적 평가를 위하여 일회성 교육 참가인원 제외 산정</p> <p>② 한식 교·강사 양성 실적 = (당해연도 '국내외 한식 교·강사교육' 인원 / 목표 교육인원) × 100 · 교육 인원 : 국내외 한식 교강사 교육 수료 인원 · 목표 교육 인원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의 110%</p>
(3) 한식 교육 만족도 (평가방법 : 목표대실적, 계량 2점)	
정 의	국내외 한식전문인력 교육 만족도를 조사하여 질적 성장 실적을 평가한다.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p>국내외 한식 교육 만족도</p> <p>= ① (한식 조리 관련 교육 만족도 x 40%) + ② (한식 교·강사 교육 만족도 x 60%)</p> <p>① 한식 조리 관련 교육 만족도</p> <p>= (당해연도 만족도 / 목표 만족도) × 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족도 : 국내외 한식전문 조리 인력 교육 수료인원(국내외 한식 관련 교육기관·호텔 등)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의 평균값 · 목표 만족도 : 전년 대비 110%로 산정 {전년도 점수+(100 - 전년도 만족도 점수)*10%} <p>② 한식 교·강사 교육 만족도</p> <p>= (당해연도 만족도 / 목표 만족도) × 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족도 : 한식 교·강사 양성인력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의 평균값 · 목표 만족도 : 전년 대비 110%로 산정 {전년도 점수+(100 - 전년도 만족도 점수)*10%}
---------------	--

(4)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5점)

④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10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총괄요약표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50)	1. 경영전략	14	11	3
	(1) 리더십	4	4	-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6	6	-
	(3) 국민소통	4	1	3
	2. 사회적 책임	13	8	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2	1	1
	(2) 안전 및 재난 관리	3	2	1
	(3) 친환경·탄소중립	2	1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1	2
	(5) 윤리경영	3	3	0
	3. 재무성과관리	11	8	3
	(1) 재무예산관리	8	8	-
	(2) 재무예산성과	3	-	3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	12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9	9	-
	(2) 노사관계	3	3	-
소 계	50	39	11	
주요 사업 (50)	1. 클러스터 활성화사업	13	5	8
	(1) 분양기업 유치 성과	3	-	3
	(2) 청년창업 지원 성과	5	-	5
	(3) 클러스터 활성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5	-
	2. 비즈니스 지원 사업	13	5	8
	(1) 마케팅 지원 활성화	4	-	4
	(2) 판로개척 성과	4	-	4
	(3) 비즈니스 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5	-
	3. 기술 지원 사업	14	5	9
	(1) 시설장비 가동률	4	-	4
	(2) 제품 출시 성과	5	-	5
	(3) 기술 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5	-
	4.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10	10	-
	소 계	50	25	25
합 계	100	64	36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14점]

- (1) 리더십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국민소통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사회적 책임 [13점]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11점]

- (1) 재무예산관리 [8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④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점]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9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13점]

(1) 분양기업 유치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3점)	
정 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유치 노력을 통한 분양면적 목표 달성 실적을 평가한다.(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실적(A) = (분양실적/분양목표) × 100 ② 분양실적은 분양면적 실적을 의미함 - 단,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업체 중 계약 해지업체는 분양실적에서 제외함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입주계약 등)에 따름
(2) 청년창업 지원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5점)	
정 의	청년식품창업성장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창업 지원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전년 대비 11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창업 지원 성과 = $\left(\frac{(\text{창업성과} \times 0.4) + (\text{제품출시건수} \times 0.6)}{\text{청년식품창업성장지원 팀 수}} \right) \times 100$ ② 창업 성과는 당해연도에 사업자등록(법인사업자 전환 포함)한 기업의 건수로 함 ③ 제품 출시 건수는 당해연도에 품목제조보고 신청 후 승인이 이루어진 제품의 건수로 함 ④ 청년식품창업성장지원 팀 수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선정되어 협약체결 한 팀 수로 함 ⑤ 창업 성과의 목표치는 전년 대비 110% 상향으로 한다. - '25년부터는 창업 지원 성과 실적을 목표부여 방식으로 전환하여 평가한다.
(3)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5점)	

② 비즈니스 지원 사업 [13점]

(1) 마케팅 지원 활성화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4점)

정 의	식품기업 마케팅 지원 성과 향상을 위한 진흥원의 노력을 평가한다.(상향 지표)
목 표	전년 대비 110%
측정 산식 및 변수	<p>① 실적(A) = 참여기업 수* × 0.4 + 참여바이어** 수* × 0.6</p> <p>* 국내외 온·오프라인 마케팅지원, 비즈니스플랫폼에 참여한 기업(중복 포함)</p> <p>** 국내외 온·오프라인 마케팅지원, 비즈니스플랫폼에 참여하여 푸드비즈온 회원사로 가입된 바이어(누적)</p>

(2) 판로개척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4점)

정 의	식품기업 마케팅 지원을 통한 식품기업의 판로개척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 지표)
목 표	전년 대비 110%
측정 산식 및 변수	<p>① 실적(A) = 상담* 건수 × 0.4 + 구매의향서·MOU 접수** 건수 × 0.6</p> <p>* 국내외 온·오프라인 마케팅지원, 비즈니스플랫폼에서 진행된 참여기업-바이어 간 매칭 상담</p> <p>** 국내외 온·오프라인 마케팅지원, 비즈니스플랫폼 상담 과정에서 접수된 구매의향서·MOU·PO</p>

(3) 비즈니스 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5점)

③ 기술 지원 사업 [14점]

(1) 시설장비 가동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4점)	
정 의	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식품관련 기업·기관·대학 등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비 지원 활성화 노력을 평가한다.
목 표	전년 대비 105%
측정 산식 및 변수	<p>① 실적(A) = $\left(\frac{\text{장비가동시간}}{\text{장비가용시간}}\right) \times 100$</p> <p>② 장비 가동시간 : 장비 사용을 위해 수행한 실질가동시간과* 보조가동시간의** 합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실질가동시간 : 시험분석 계측 교육 등을 위해 장비를 가동한 시간</p> <p>- 보조가동시간 : 사용 전 장비 예열, 유지보수 작업, 사용 후 장치 청소/세척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장비를 가동한 시간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히 켜져 있는 시간 제외)</p> </div> <p>③ 장비 가용시간: 근무일수* × 8시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연간 근무일수: 주5일 × 50주 = 250일</p> </div> <p>④ 장비가동률 측정장비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진흥원 보유장비 중 3,000만원 이상 장비로 한함</p>
(2) 제품 출시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계량 5점)	
정 의	식품기업 기술·생산 지원을 통한 제품 출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62건
측정 산식 및 변수	<p>① 실적(A) = 제품* 출시 건수</p> <p>* 기술지원 사업(공동기술개발사업, 권역별 산학연 기술지원, 소스 및 전통발효식품 혁신성장지원)을 통해 출시된 제품(품목제조보고 승인 필요)에 한함.</p>
(3) 기술 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5점)	

④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10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축산환경관리원

❖ 총괄요약표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50)	1. 경영전략	14	11	3
	(1) 리더십	4	4	-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6	6	-
	(3) 국민소통	4	1	3
	2. 사회적 책임	13	8	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2	1	1
	(2) 안전 및 재난 관리	3	2	1
	(3) 친환경·탄소중립	2	1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1	2
	(5) 윤리경영	3	3	0
	3. 재무성과관리	11	8	3
	(1) 재무예산관리	8	8	-
	(2) 재무예산성과	3	-	3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	12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9	9	-
	(2) 노사관계	3	3	-
소 계	50	39	11	
주요 사업 (50)	1. 축산환경 관리사업	15	5	10
	(1)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실적	5	-	5
	(2) 농가 환경개선사항 이행률	5	-	5
	(3) 축산환경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5	-
	2. 자원순환 활성화사업	14	5	9
	(1) 공동자원화시설 C등급 비율	6	-	6
	(2) 경축순환농업 협력사업 참여농가 화학비료 절감률	3	-	3
	(3) 자원순환 활성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5	-
	3. 축산환경개선 교육·컨설팅사업	11	5	6
	(1) 축산환경 컨설턴트 양성실적	2	-	2
	(2) 교육·컨설팅 만족도	4	-	4
	(3) 축산환경개선 교육 컨설팅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5	-
	4.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10	10	-
	소 계	50	25	25
합 계	100	64	36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14점]

- (1) 리더십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국민소통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사회적 책임 [13점]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윤리경영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11점]

- (1) 재무예산관리 [8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④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점]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9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축산환경 관리사업[15점]

(1)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실적(평가방식: 목표 대 실적, 계량 5점)

정의	농가 스스로 가축 사양관리 강화, 악취발생 저감 등 축산환경을 스스로 개선하는 축산농가 5천호를 '22년까지 육성한다.(상향지표)
목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p>①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실적(호) = $\frac{\text{농식품부에서 검증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신규 및 재지정) 수}}{\text{농식품부 장관 명으로 지정된 깨끗한 축산농가 수}}$</p> <p>* 농식품부 장관 명으로 지정된 깨끗한 축산농가 수</p> <p>* '22년 지정실적 산출방식: 신규 신청농가 + 재지정농가[근거: 재지정 절차(재지정 농가 평가 방법(신청서류, 현장평가 등), 평가항목 등)와 신규 신청농가 지정절차가 동일하여 재지정농가 수를 신규 지정건수에 포함]</p> <p>② 지자체에서 검증·신청한 축산농장을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최종검증(현장평가) 후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p> <p>③ 농식품부 축산환경 개선대책에 따라 '30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1만호 조성</p> <p>* '22년까지 5천호 조성 계획(농식품부, 前 정부 국정과제)</p> <p>* 조성실적('17~'21년) 및 연도별 지정 목표('22~'24년)</p> <p>* 최근 3년간 지정실적 평균의 110% 이상으로 연도별 목표 설정('19~'21년 지정실적 평균 1,151호의 110% 이상 → '22년 1,270) 및 중장기적 목표 설정을 위해 전년대비 5% 이상 목표 상향('23) 1,350호 → ('24) 1,450]</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조성실적 ('17~'21년 누계)</th> <th colspan="3">연도별 지정 목표</th> </tr> <tr> <th>'22년</th> <th>'23년</th> <th>'24년</th> </tr> </thead> <tbody> <tr> <td>5,242</td> <td>1,270</td> <td>1,350</td> <td>1,450</td> </tr> </tbody> </table>	조성실적 ('17~'21년 누계)	연도별 지정 목표			'22년	'23년	'24년	5,242	1,270	1,350	1,450
	조성실적 ('17~'21년 누계)		연도별 지정 목표									
'22년		'23년	'24년									
5,242	1,270	1,350	1,450									

(2) 농가 환경개선사항 이행률(평가방식: 목표 대 실적, 계량 5점)

정의	환경개선 대상농가의 단기 이행사항을 지정하고 농가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환경개선 정도를 평가한다.(상향지표)
목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p>① 농가 환경개선사항 이행률(%) = $\frac{\text{단기 이행실적 인정건수}}{\text{환경개선 대상농가 단기 이행사항 지정건수}}$</p> <p>*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결과보고서 상의 지정건수 및 인정건수로 확인</p> <p>② 축산환경개선 대상지역 및 관리대상 농가를 선정하여 농가별 단기 이행사항 지정 후 정기점검 및 컨설팅 실시, 대상지역 개선결과 공유</p> <p>- 환경개선 대상농가의 이행사항에 대해 외부평가단을 활용하여 매년 평가를 통해 농가이행사항 확인</p> <p>- 대상지역 및 관리대상 농가는 매년 변경 예정(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진행)</p> <p>③ '21년 실적을 기준으로 연도별 목표 5% 상향 관리</p> <p>* ('22) 83.7% → ('23) 87.9 → ('24) 92.3</p>
------------	---

(3) 축산환경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5점)

②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14점]

(1) 공동자원화시설 C등급 비율(평가방식: 목표 대 실적, 계량 6점)

정 의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의 핵심주체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시설 가동률 제고 등 운영능력 향상에 기여한다.(하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p>① 공동자원화시설 C등급 비율(%) = $\frac{\text{해당 연도 C등급 시설 개소}}{\text{전체 공동자원화시설 개소}}$</p> <p>* 전체 운영 중인 공동자원화시설 중 운영실태 점검을 받은 시설</p> <p>② 매년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정리·분석·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실태 점검은 가동률, 퇴비·액비 살포 실적 및 품질관리, 악취관리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운영 관리 및 살포비 지급 - 점검결과에 따른 C등급 시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 <p>* '22년 축산환경관리원 및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 점검결과('21년 실적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매우우수(A)</th> <th>우수(B)</th> <th>보통(C)</th> </tr> </thead> <tbody> <tr> <td>공동자원화시설</td> <td>41개소(48.8%)</td> <td>32개소(38.1%)</td> <td>11개소(13.1%)</td> </tr> </tbody> </table> <p>- '20년에 운영실태 평가방식을 변경(상대평가 → 절대평가)하여 C등급 개선 유도</p> <p>* (A등급) 130점 이상, (B등급) 100점 이상 130점 미만, (C등급) 100점 미만</p> <p>③ 점검대상 시설 대비 C등급이하 시설수의 비율은 신규 지표로서 매년 목표 20% 이하로 관리 계획임(자원화시설은 매년 신규시설이 확충되어 목표 자동 상향)</p>			구분	매우우수(A)	우수(B)	보통(C)	공동자원화시설	41개소(48.8%)	32개소(38.1%)	11개소(13.1%)
구분	매우우수(A)	우수(B)	보통(C)								
공동자원화시설	41개소(48.8%)	32개소(38.1%)	11개소(13.1%)								

(2) 경축순환농업 협력사업 참여농가 화학비료 절감률(평가방식: 목표 대 실적, 계량 3점)

정 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참여농가의 화학비료 절감률 조사 실적을 평가한다.(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p>① 경축순환농업 참여 경종농가 화학비료 절감률(%) = $\frac{\text{경축순환농업 참여 전 화학비료 사용량} - \text{경축순환농업 참여 후 화학비료 사용량}}{\text{경축순환농업 참여 전 화학비료 사용량}} \times 100$</p> <p>②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생산한 양질의 퇴비·액비를 지역 내 경종농가에게 공급하여 농작물 생산 시 활용, 효과 홍보 등으로 환경 친화적 순환농업 실현</p> <p>*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 경종농가 경영개선, 토양환경 개선 효과 등</p> <p>③ '21년 실적을 기준으로 연도별 목표 5% 상향 관리</p> <p>* ('21) 72% → ('22) 75 → ('23) 78 → ('24) 81</p>		

(3) 자원순환 활성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5점)

③ 축산환경개선 교육·컨설팅 사업[11점]

(1) 축산환경컨설턴트 양성실적(평가방식: 목표 대 실적, 계량 2점)

정 의	축산악취 저감,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이용 등 축산환경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도·관리할 수 있는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p>① 축산환경컨설턴트 양성 실적(명) = 해당 연도 민간자격 취득 인원</p> <p>* 민간자격시험(1차 필기, 2차 실기) 합격을 통해 양성된 인원 수</p> <p>② 기존 기초 심화교육 이수만으로 전문컨설턴트를 양성했던 방법을 개선하고자 '21년도부터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자격시험 급수별(1~3급) 원활한 운영 및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시험관리위원회 구성 등 자격시험 시행</p> <p>③ 민간자격시험(필기·실기)을 통해 능력이 검증된 우수 전문인력을 컨설턴트로 양성하고, 적극적인 홍보 등의 노력으로 매년 40명 이상(민간 자격 취득자)을 배출할 계획임</p> <p>◇ 축산환경컨설턴트 양성 계획</p> <p>* 인력(누계): ('21) 40명 → ('22) 90 → ('23) 150 → ('24) 220</p> <p>*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20.11.30.에 등록한 민간자격 취득자(소관: 한국직업능력연구원)</p>

(2) 교육·컨설팅 만족도(평가방식: 목표 대 실적, 계량 4점)

정 의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 매년 만족도 조사 실적을 평가한다.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p>① 교육 컨설팅 만족도(점) = 해당 연도 조사 결과</p> <p>* (교육) 전문기관을 통한 매년 객관적인 만족도 조사·분석 실시</p> <p>* (컨설팅) 지자체에서 해당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조사 실시 및 결과 피드백</p> <p>② 매년 축산환경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현장조사 및 컨설팅을 실시 중임</p> <p>◇ '22년 교육 및 컨설팅 실적[2,766명 수료, 설문조사 1,017(36.7%)답변]</p> <p>* 교육 이수자(2,766명): 온라인 교육 2,275(축산환경 담당 공무원 및 가축분뇨 업무담당자 의무교육 등 8개 과정), 집합 교육 491명(축산환경개선 역량강화 교육, 축산환경 담당 공무원 실습교육, 축산악취 개선 전문가 순회교육)</p> <p>* 컨설팅 실적(73호): 축산악취개선지역(33개 지역)</p> <p>◇ 매년 교육, 현장조사 및 컨설팅 실시 예정</p> <p>③ '22년 목표 기준으로 연도별 목표 2점(100점 만점) 상향을 목표로 관리 계획임</p> <p>* ('22) 84점 → ('23) 86 → ('24) 88</p>

(3) 축산환경개선 교육·컨설팅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5점)

④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10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